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장관 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요청 근거 신설 등 〉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67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장관 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요청 근거 신설	3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 작업중 지·대피 조치 권한 부여	9
3.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사전 절차 신설	14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8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위험성평가 미 실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장관 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①근로자가 기계·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위험성평가의 결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③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명령 내용을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④시정조치 명령과 ⑤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6조의2(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 ① 근로자는 작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

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기계·설비등에-----

-----시정조치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9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3. ~ 6. (생 략)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u> 2.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68조(벌칙) ----- ----- ----- -----. 1. <u>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u>----- ----- ----- ----- -----<u>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u>----- ----- ----- ----- -----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

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계·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성평가의 결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험평가 실시의 활성화와 사업장에서의 작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 의무”와 “필요 시 추가 조치”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수범자인 사업주가 법률만 보아도 처벌 대상행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주의 의무를 고려하여 해당 벌칙의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¹⁾.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①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사업장의 사전 예방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데 취지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

1)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즉시 필요하므로 보다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고발 등의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②전 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은 과태료를 통해서도 위험성평가의 이행력 제고라는 제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최후적·보충적 수단인 형벌의 부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 제도의 벌칙 조항과의²⁾ 균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고위험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의 경우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 작업중지·대피 조치 권한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 근로자를 작업중지·대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와 근로자를 작업중지 시킨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중과실 없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작업중지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임(안 제52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2조(근로자등의 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경우 근로자는-----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

②·③ (생략)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근로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
-----.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 중지 또는 대피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8조(벌칙) -----

-----.

1. 제36조, 제38조제1항부터-----

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 -----제52 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 1항-----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제 사업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와 근로자 작업중지 조치 권한을 행사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이러한 작업중지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작업중지권이 결과에 대한 심리적 부담 없이 산업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작업중지 권한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선제적·능동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나 근로자를 작업중지 시킨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위원회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①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 사유,³⁾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의 직무 수행 관련 사유,⁴⁾ ③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 요구,⁵⁾ ④작업중지권 행사,⁶⁾ ⑤「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 신고를⁷⁾ 이유로 사업주

3)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중 고객 등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등 조치 요구를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⁸⁾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 위반 사실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⁹⁾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의 처벌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는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자기보호적 성격의 권리인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회에 작업 중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도록 하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제3자가 경영상 결정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권한-책임 불일치 문제 발생하여 현행 법령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이 아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8)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9)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하였음.

또한 사업주의 손배 청구 금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금지의 범위·대상·요건 등을¹⁰⁾ 법률에 함께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손배 청구 금지 요건 등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적 청구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작업중지 행사 근로자 등에 대한 처벌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등¹¹⁾ 유사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10) ◦ 면책의 요건(위험의 급박성, 작업중지의 불가피성 등), ◦ 대상 주체, ◦ 대상 손해의 범위, ◦ 입증 책임 등

1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사전 절차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하기 전에 작업중지를 요청한 자가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고, 조치에 필요 하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2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2조의2(작업중지의 해제) ① 사업주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 자가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개선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나 근로자가 행사한 작업중지를 사업주가 해제하는 경우에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¹²⁾ 개정안은 사업주가 중지된 작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한 자가 참여하는 점검과 조치 등을 거치도록 하는 사전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작업 중지의 사유였던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근로자의 안전이 온전히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업중지 및 해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규정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특성에 맞춘 해제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규모·조직, 작업중지 사유, 위험특성, 개선조치사항 등)을 반영한 절차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해제 절차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자유롭게 요구하기 어려워져, 제도

12) 다만, 현행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3] > 4. 작업장 안전관리 >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의 활성화와 현장 안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